

[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5 -113호]

# 2025 대전·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관광공사는 대전·세종 관광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기업·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「2025 대전·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. 05. 28.

대전관광공사 사장

## 1 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5 대전·세종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- 지원규모 : 관광기업 5개 사, 사업화 지원금 총 60백만원
- 지원대상 : 대전 세종 소재 관광사업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지역대전세종의 관광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
- 지원내용 : 디지털 역량 진단 및 전략수립을 위한 1대1 매칭 컨설팅, 디지털 분야 전환을 위한 자금 최대 15백만원 지원
- 접수기간 : 2025. 5월 28일(수) ~ 6월 11일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1su33@naver.com
  - 메일/파일제목 : [디지털전환]\_업체명(신청자명)
- 접수 확인 및 문의 : 주식회사 커비스 (070-7954-6187)

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(044-867-0440)

## 2 세부내용

### □ 1대1 매칭 컨설팅 지원

-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~ 10. 30.(목)까지
- (지원내용) 디지털 역량 진단 및 실행 전략 마련(최대 3회)

### □ 사업화 자금 지원

-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~ 10. 30.(목)까지
- (지원규모) 총 60,000천원 \*각15,000천원 2개 사, 각10,000천원 3개 사(차등지급)
- (지원내용)

분야		개념	내용(예시)
①	데이터 활용	고객관리 및 경험관리,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전환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고객관리(CRM), 고객경험관리(CEM), 전산처리시스템(ERP), 데이터분석 기술개발</li> <li>◆ 내/외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</li> </ul>
②	상품 혁신	디지털 기술 요소 기반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AR/VR 등 실감형 상품 개발,</li> <li>◆ 비대면 랜선 여행 상품 개발</li> <li>◆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</li> <li>◆ CI/BI, 회사소개서, 검색 엔진 최적화(SEO), 앱 개발, 핀테크, 디지털 고객 응대 등</li> </ul>
③	채널/마케팅	웹사이트, 모바일 앱 등 판매/유통 관련 채널 구축 및 마케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홈페이지 제작/고도화(UI, UX 개선), 모바일 앱 개발 및 고도화 등</li> <li>◆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기반 마케팅 전환</li> </ul>
④	기술/인프라	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IoT/Beacon을 활용한 상품 개발, 챗봇, 크롤링 시스템 개발</li> <li>◆ 클라우드 서버 고도화, 키오스크 및 무인 결제기기 등</li> </ul>
⑤	경영 혁신	사내 경영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경영 정보관리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</li> <li>◆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경영/실적 자동화 관리 등</li> </ul>
⑥	기 타	기타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디지털 전환 항목 (사전 협의)</li> </ul>

### ○ 유의사항

-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
- **100% 사후정산으로 지급(선집행, 후정산)**하며,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최종지급
- 사업화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최종 선정 후 별도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
- 정해진 지원 항목 내에서만 예산 집행 가능 **※불입** 참고

□ **신청자격 제한** ※ 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 시, 참가 불가

-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가 **2022. 5. 28.** 이후인 자\*총 36개월 미달
- 대전·세종 관광과 관련이 없는 아이템으로 공모에 신청하는 자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)을 영위하려는 자
- 공모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,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
-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- 휴업 중인 자 ※ 공모 마감일(2025. 6. 11.) 이전 영업개시 후 정상영업할 경우 가능
- 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재직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
**[예외조건]**

- ① 접수 마감일(25. 6. 11.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 -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
  -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
- ※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시 관련자료 이메일 제출 필수

-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
-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### 3 심사 및 제출서류

- 선정절차 : 적격검토 → 1차 서류심사 → 2차 발표심사 → 결과발표
- (적격검토) 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중복수혜\* 점검
  - \* **2025년 ‘디지털 전환’ 관련 사업화 자금 수혜 여부**
- (1차 서류심사)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사업계획서 심사
  - ※ 고득점 순 선정
- (2차 발표심사)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PT발표 심사
- (결과발표) 개별안내, 대전관광공사·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

## ○ 심사기준

구분	평가분야	평가항목
1	사업의 적합성(20점)	• 신청조건 부합 여부 등 사업에 대한 적합성
2	실현 가능성(20점)	• 구체적인 목표설정 여부 • 시장분석 및 사업 실현 가능성 •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
3	사업의 구체성(20점)	• 사업현황 및 문제점 자체분석 가능 • 추진일정 및 사업화 자금의 사용계획의 명확성
4	사업의 기대효과(20점)	• 대전, 세종 관광산업의 발전 기여도 • 자사의 성장 기여도
5	사업 지속성(20점)	• 해당 사업 종료이후, 지속가능 여부

- 서류 및 발표심사 모두 동일한 평가항목 적용
- 최고점, 최저점 제외 평균 60점 이상(100점 만점) 고득점 순 선정
- 접수 미달 시 모집연장 진행

○ 결과발표 : 2025. 6. 25.(수) / 개별안내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

## ○ 심사 관련 유의사항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</li> <li>2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였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종 선정 후 취소함</li> <li>3. 필요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애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</li> <li>4.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</li> <li>5.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</li> </ol>
---

## 4 신청 · 접수안내

○ 접수기간 : 2025. 5. 28.(수) ~ 6. 11.(수) 18:00까지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제출방법	제출처
이메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메일 주소) 1su33@naver.com</li> <li>▪ (메일 제목) [디지털전환]_업체명(신청자명)</li> </ul> (예) [디지털전환]_관광스타(홍길동)

## ○ 필수 제출서류

순번	제출방법	제출처
1	[서식1] 체크리스트	■ 서명날인 여부 확인
2	[서식2] 신청서	■ 서명날인 여부 확인
3	[서식3] 사업계획서	■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
4	[서식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■ 서명날인 여부 확인
5	[서식5] 매출실적 증빙자료	■ 전년도(2024년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6	[서식6] 사업자등록증	■ 해당 공모사업 자격요건 확인 - 대전·세종 소재 관광 융복합 업종 등 관광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
(기타) 별도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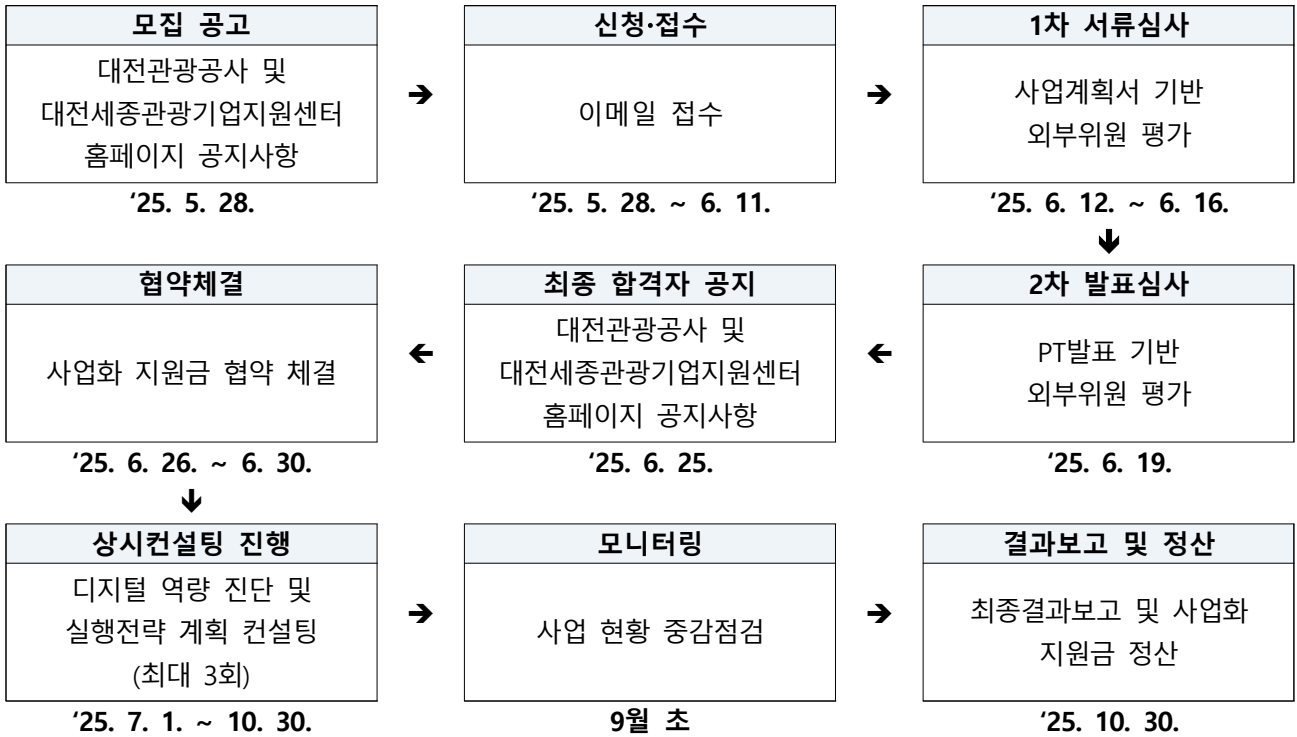
※ 반드시 작성 후, 1개의 PDF파일로 제출 \*날인 누락 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

#### <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상기 제출서류는 **제출 필수이며, 누락 시 자동탈락**
  -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
- 제출한 내용에 대해 **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**
  -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, 사업 참여 제한, 환수조치 등 가능
- 신청·접수 마감일 **18:00 정각에 접수 마감**
  -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,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
-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, 서명란의 **서명 필수**
  - 서명/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,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

## 5 일정안내 및 문의처

- 진행 일정(안)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○ 문의처 : 주식회사 커비스 (070-7954-6187)

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(044-867-0440)

## 6 유의사항

-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
-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,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
-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사업실태 조사(사업영위유무, 매출, 고용 등)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

- 본 사업은 『관광진흥법 제 3조』에 의거,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대전, 세종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
-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,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
-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
-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
-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,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

## 붙임 사업비 지원 기준 및 범위

비 목		기 준
재 료 비	기 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의 : 사업계획서 상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상품, 서비스, 재화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제품, 데이터,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등 유/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</li> <li>•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제품(IoT,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등)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</li> <li>•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li>•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</li> </ul>
	유 의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재료비 총액은 지원금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</li> <li>※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,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</li> <li>※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</li> <li>※ 재료 구입 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 할 경우, 사전승인신청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</li> <li>※ 재료비를 대여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(렌탈, 리스 등), 협약기간 내에 집행하는 대여료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li>※ 단순저장장치(USB, 외장하드 등)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(USB증폭기 등) 등 구매 불가</li> </ul>
	증 빙 서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사전승인신청서(500만원 초과시)</li> </ul>

비 목		기 준
외주용역비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(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)에 의뢰·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</li> <li>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집행</li> <li>외부 전문업체(외주용역업체)는 <b>1년 이상</b>의 해당분야 종사경력, 외주용역대상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(<b>운영기관 사전검토를 통한 승인 필요</b>)</li> <li>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/ul>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(예시 :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등)</li> <li>※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·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</li> <li>※ <b>외주용역 2000만원 이상(공급가액)</b>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<b>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</b></li> <li>* 외부 전문업체(업력 1년 미만)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, 운영기관은 아이템과의 연관성, 과업 수행 가능성, 보유역량, 용역비용,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함</li> <li>※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거래, 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</li> <li>※ 프리랜서 중계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(외주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함)</li> <li>※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,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</li> <li>※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</li> </ul>
	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포함), 결과보고서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</li> <li>필요시 제출: 사전승인신청서, 지급각서, 이행보증증권</li> </ul>
지급수수료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관광디지털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</li> <li>① 등록비 : 디지털 전환을 위한 S/W 및 기술 등록비</li> <li>② 가입비 :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입비 (일회성)</li> <li>③ 구독료 :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S/W 사용 시, 부과되는 월별 사용료</li> <li>④ 임대비 : 외부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임대할 때, 계약 기간 동안 지불되는 임대료</li> <li>⑤ 기술보호비 : 기술 임차(갱신)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</li> <li>⑥ 저작권료 : 기술 또는 시스템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저작권 수수료</li> <li>⑦ 기타 수수료 : ①~⑥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</li> </ul>
	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등록비, 가입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계약한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며, 협약기간 이후 부과되는 비용에는 집행 불가 (도메인 등록비,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등)</li> <li>※ 구독형 서비스 구입 시, 협약기간 내에 부과되는 비용만 집행 가능 (협약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구독료는 집행 불가)</li> <li>※ 모든 지급수수료는 협약기간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한 해서 집행이 가능하며,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</li> <li>예시) 협약기간이 '25. 7. 1.~10. 29. 경우,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, 10. 29.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 (협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사전결제 불가)</li> </ul>
	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임대(등록/가입 등) 계약서, 견적서 등</li> </ul>

## 1.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- 가. 지원금 및 자부담은 부가세가 포함 기준이며, 최종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**사후정산으로 지급**
- 나. 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(법인카드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)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, 적격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함.(사전문의요망)  
**단, 모든 영수증은 5만원 이상의 법인카드 영수증만 인정하며, 현금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, 개인카드 영수증 사용 불인정**
- 다. 모든 집행비용은 적격증빙, 이체확인증, 성과품(결과보고 등)을 제출해야 함
- 라. 붙임 지출 증빙양식을 준수하여 **2025년 10월 30일까지** 제출해야 함

## 2. 지원금 정산

- 가. **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가치세는 자부담(기업 부담)을 원칙**으로 함
- 나. 기업의 정산서 및 성과물에 대하여 검토 후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,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적정금액으로 감액조정하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다. 허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공사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
- 라. 자부담 집행내역이 확인이 완료되면, 지원금 정산이 가능함

## 3. 성과제출: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 추진성과를 서식에 맞춰 2025년 10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